



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

: 보험상품을 중심으로

양승현 연구위원

-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위법계약해지권을 신규 도입함

 -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최대 5년간 계약해지권을 부여함
- 첫째, 금융회사 등이 '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'하여 '계약을 체결'한 경우여야 함

 - 6대 영업행위 규제 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제외한 적합성·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, 불공정영업 행위 내지 부당권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폭넓게 적용됨
 - '위반'과 '계약 체결'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한 점이 있음
- 둘째,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 시 금융회사 등은 10일 내 수락/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금융회사 등이 '정당한 사유'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 -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차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해석 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됨
- 셋째, 금융회사 등은 계약 해지 시 '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'을 요구할 수 없음

 -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해지 시점 이전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그때까지 위험보장 및 계약의 체결·유지·관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유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임
 - 보험상품에서 보험회사가 기납보험료 중 어느 부분을 보유하고 어느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상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
- 넷째, 행사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

 -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, 상법상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권, 표준약관에 따른 품질보증해지 제도 등 계약 체결상 위법에 대한 조기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
 - 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분쟁해결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상품특성별, 계약기간별 등으로 적절히 행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

1. 검토배경



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, '금소법')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임
 - 금융통합법률로서의 금소법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금융권역별 규제 체계를 전 권역을 아우르는 동일기능·동일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
 - 주된 내용으로, 폭넓은 6대 영업행위 규제 적용¹⁾ 및 위반 시 과징금·과태료 부과,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,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및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을 들 수 있음
 - 그 밖에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·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, 소액분쟁 시 소송이탈 금지,²⁾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, 금융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규정함
 - 규제의 대상, 적용범위, 절차적 준수사항, 판단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가 많으며,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, 법 시행 전 조속히 이를 마련할 방침임
- 보험업권에서도 법안의 내용 및 법 시행으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 규제 등에 대해 면밀한 비교·분석 및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
 - 현재 보험업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, 청약철회 등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내용이나, 적용대상이나 절차적 요건, 판단기준 등에서 변경, 추가 내지 강화되는 부분이 존재함
 - 위법계약해지권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고의·과실 입증책임 전환 등 신규 도입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- 특히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데, 최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약체결 과장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의 계약관리 등 업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- 본고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의 요건 및 효과 등 주요 내용 및 주로 보험상품과 관련된 예상 쟁점에 대해 검토함

1) 적합성·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 및 허위·과장광고 금지임

2)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건에 대해서는 절차 완료 전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는 제도임

2.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



- (개요 및 취지) 금소법 제47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³⁾이 적합성·적정성 원칙 준수 의무, 설명의무 등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위법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
 -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록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,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⁴⁾으로 파악됨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항·제3항,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, 행사대상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(권리발생사유) 금융회사등이 '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'하여 '계약을 체결'한 경우에 발생함

- 계약체결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 권유(§17③), 부적정 계약에 대한 고지 및 확인의무 불이행(§18②),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(§19①), 거짓·왜곡 설명 내지 설명누락(§19③)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행위(§20①) 또는 부당권유행위(§21)가 있었던 경우임
 - 6대 영업행위 준수사항 중 광고 관련 준수사항(§22)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
- 이를 '위반하여 계약을 체결'하였어야 하는데, '위반'으로 인하여 '계약 체결'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요하는지(제1설), '위반'과 '계약 체결'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권리가 발생하는지(제2설) 법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
 - 제1설을 취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상 인과관계를 요한다는 논거를 생각해볼 수 있음⁵⁾

3) 금소법상 금융회사와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, 보험대리점과 같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통칭하나, 논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'금융회사등'으로 칭함

4) 국회 정부위원회(2017), 「금융소비자보호법안·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·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」, p. 103

5) 이상훈(2017), 「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(안)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」, p. 224

- 반면, 제2설은 본조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상황이 전개되면서 계약이 더 이상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 '체결'과의 인과관계를 요할 필요가 없으며, 이렇게 보지 않으면 소비자의 입증 부담 등 보호 취지가 반감된다는 것임⁶⁾

-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계약 체결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고, 제2설을 취하면 계약 체결상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거래가 과도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설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 사료됨

■ (법적 성격) 소비자는 위법계약에 대하여 '해지를 요구'할 수 있고, 금융회사 등은 '수락/거절 여부'를 통지해야 하며(§47①), '정당한 사유'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'계약을 해지'할 수 있는 바(§47②),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및 '해지요구', '수락/거절', '해지'의 법적 성격이 문제됨

-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권리로 보아, 소비자가 '해지 요구'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이를 '수락' 또는 '거절'할 수 있고, 금융회사가 '정당한 사유'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는 비로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(제1설)가 있을 수 있음
 -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제1항의 '해지요구권'은 청구권⁷⁾으로, 소비자의 '해지 요구'는 금융회사 등에 해지를 청약하는 행위에 불과하며, 10일 이내에 금융회사 등의 수락(승낙)이 있을 때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 - 또한, 제2항의 '해지권'은 금융회사 등이 '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수락을 거절'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, 제1항의 해지요구와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해석됨
- 반면, 제1항과 제2항을 동일한 권리로 보아, 소비자의 '해지 요구'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에게 '정당한 사유'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계약이 해지된다고 보는 해석(제2설)이 있을 수 있음
 - 제2항은 별도의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고, 따라서 제1항의 '해지요구권'은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이라는 논거를 생각해볼 수 있음
 -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의 '수락/거절'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10일의 해지기간⁸⁾을 부여하는 의미 내지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 조속히 응하고 거절 시 거절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임
- 제2항에서 유사입법례⁹⁾와 같이 '...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'고 규정하였다면

6) 위 논문, p. 224~225 참조

7)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,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·변경·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함

8) 일방의 해지통고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말함

9)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각호 생략>

‘해지요구권’이 형성권임이 보다 분명했을 것이나 ‘정당한 사유 없이...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발생함

- 본조는 금융소비자에게 위법한 계약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2설이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적으로 정리함이 바람직할 것임

■ (해지의 효과) 본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해지란 계속적 계약¹⁰⁾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(§550)을 말함

- 일반원칙상 해지 시점에 이미 발생한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계약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함
 - 예컨대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해지 시점까지의 차임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며,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
 - 해지로 인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청산의무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약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짐
- 본조는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‘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자가 위법한 계약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와 실익이 있다 할 것임¹¹⁾
 - 예컨대, 대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, 은행은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며, 소비자는 미상환 대출원금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청산하게 될 것임
-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회사가 기납보험료 중 어느 부분을 보유하고 어느 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청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음¹²⁾
 - 계속적 계약 해지의 장래효에 비추어볼 때 기납보험료 전액을 반환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, 해약환급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내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
 - 보험회사는 해지 시점까지 위험보장 및 계약의 체결·유지·관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유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 바, 그 구체적 내용 및 계산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

■ (행사기간) 본조의 권리는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함

10) 계속적 급여나 회귀적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를 계속적 채권관계라 하며 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 함. 급여가 어느 일정기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으로, 어느 일정시점에 급여를 실현하는 일시적 채권관계 및 일시적 계약에 대응됨

11) 이상훈, 위 논문, p. 227 참조

12) 정순섭(2016), 「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법리 -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-」, BFL 제80호, p. 107 참조

- 최대 5년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위법계약의 범위가 넓고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¹³⁾가 제기된 바 있음
 -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에 대해 소비자가 조기에 해지하지 않고 마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분쟁해결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
 -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이미 청약철회권(보험업법§102조의4)¹⁴⁾,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취소권(상법§638조의2)¹⁵⁾ 및 표준약관에 따른 품질보증해지(생명보험표준약관§17①, ② 등)¹⁶⁾ 등 계약체결상 위법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
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위법령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행사기간을 기간별, 상품특성별로 적절히 제한하거나, '소비자가 해지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'까지로 제한하는 방식¹⁷⁾ 등으로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■ (행사 방법) 소비자는 '서면 등으로'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

- '서면 등'에 서면 외에 전화 등 통신수단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
- 그 밖에 본조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해지요구 시 '서면 등'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명시가 필요하다 사료됨
 - 소비자의 해지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10일 이내에 수락/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, 소비자의 해지요구 시에 해지사유인 위법행위 및 행위자(보험설계사 등)를 특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13) 김주영(2016), 「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의 평가 및 제언」,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『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』, p. 39~40; 위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 p. 103~105 각 참조

14) 보험업법 제102조의4(청약철회)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(이하 이 절에서 "청약자"라 한다)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(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다만,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5) 제638조의3(보험약관의 교부·설명 의무)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6) 제18조(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)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(도장을 찍음)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17) 유사한 취지로 이상훈, 위 논문, p. 230 참조

3. 결어



- 위법계약해지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도 유사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서 현 시점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 - 행사기간, 행사요건, 행사대상 및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부분이 많은 점 역시 현 시점에서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
 - 아울러 본조 외 부분에서 구체화될 하위법령의 내용, 예컨대 해지사유인 적합성·적정성원칙, 설명의무 등에 관한 위법행위 판단기준 등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, 금소법의 규제목적 및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당국, 학계,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논의 및 의견개진을 통해 보험산업 및 보험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**kiri**